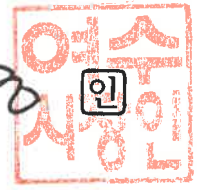


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3 월 9 일

여 수 시 장 김기경



여수시 조례 제2176호

붙임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”를 “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64조에 따라 여수시의회”를 “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”으로 한다.

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13조) 중 “여수시의회회의 규칙”을 “「여수시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 하며,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인명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

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교섭단체의 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정당정책의 추진
2.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
4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(지원) 의장은 제1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「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「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③ 「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「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④ 「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중 “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「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「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「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<u>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----- -----.</p> <p><u>제13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인명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</u></p>

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교섭단체의 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정당정책의 추진

<신 설>

<신 설>

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  
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  
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
항은 여수시의회회의규칙을 준  
용한다.

<신 설>

2.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  
의 및 조정
4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  
사수렴 및 조정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  
요한 사항

제15조(지원) 의장은 제14조의 교  
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 
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  
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 
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준용규정) -----  
-----  
----- 「여  
수시의회 회의 규칙」-----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 
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 
「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 
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」 일부  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여수시의회 위원  
회 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의회

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② 「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「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③ 「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「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④ 「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중 “여수시의회위원회 조례”를 “「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「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여수시의회위원회  
조례”를 “「여수시의회 교섭단  
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 
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